

【서식 제1호】

접수번호	
------	--

## 입찰참가등록서류

「DDP 살림터 문화콘텐츠 위탁운영사업자 선정」

2017. .

(주)대표회사명

【서식 제1-1 호】 입찰참가 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b>사업자등록번호</b>		<b>업체등록번호</b>	
<b>신청인</b>	<b>상호(법인명)</b>	<b>법인등록번호</b>	
	<b>주소</b>	<b>전화번호</b>	
	<b>대표자</b>	<b>주민등록번호</b>	
<b>입찰개요</b>	<b>공고번호</b>	<b>제 호</b>	<b>입찰일자</b>
	<b>입찰건명</b>	DDP 살림터 문화콘텐츠 위탁운영사업자 선정	
<b>입찰보증금</b>	<b>납부</b>	· 보증금율 : 5% · 보증금 납부방법 : 보증보험증권	
<b>대리인 / 사용자</b>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b>성명</b>	<b>주민등록번호</b>	<b>사용인감</b> :                      ②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재단의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공고문,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할 것임을 확약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각 1부 2.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용자인감계 각 1부 4. 기타 공고로 정한 서류			
2017. . 신청인 : 회사명 대표자명                      ②			
<b>(재)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귀하</b>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디자인재단에서 시행하는 DDP 살림터 문화콘텐츠 위탁운영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 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 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디자인재단,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디자인재단,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디자인재단, 서울디자인재단,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 하도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디자인재단,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

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디자인재단,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 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디자인재단,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7. . .

서약자 : ○○○회사 대표 ○○○ (날인)

○○○ 업체명(기관명)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디자인재단에서 시행하는 DDP 살림터 문화콘텐츠 위탁운영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17 .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날인)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업명 : DDP 살림터 문화콘텐츠 위탁운영사업자 선정
2. 사업금액 : \*공란, (입찰금액으로 추후 기재)
3. 발주자명 : (재)서울디자인재단DDP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표자성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 ③ 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그러나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 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

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 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17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 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 등록번호

##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일자	2017년 월 일
입찰건명	DDP 살림터 문화콘텐츠 위탁운영사업자 선정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사업자 등록번호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사업자 등록번호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사업자 등록번호

(인)

## 위 임 장

본인은 ○○○업체의 대표로서 서울디자인재단에서 시행하는 「DDP 살림터 문화콘텐츠 위탁운영사업자 선정」 제안공모에 관한 모든 업무 권한을 아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소 속 :  
직 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2017.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재)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귀하**

【서식 제2호】

접수번호	
------	--

## 사업제안서 제출 서류

「DDP 살림터 문화콘텐츠 위탁운영사업자 선정」

【서식 제2-1호】 제안서 제출서(공문)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참 조 DDP 운영본부 운영팀

제 목 DDP 살림터 문화콘텐츠 위탁운영사업자 선정 사업제안서 제출

---

1. DDP 살림터 문화콘텐츠 위탁운영사업자 선정에 신청하고자 별첨과 같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첨 부 : 1. 제안서 접수증 1부.

2. 정량평가자료 1부(증빙자료 포함) 2부.

3. 사업제안서 (원본1부, 평가본 9부) 10부.

4. 사업제안서 및 발표본 수록 USB 2매 .

5. 가격제안서 1부. 끝.

2017. . .

업 체 명 : ○○○ (인)

○○ 업체명(기관) 대표 성명 (직인)

DDP 살림터 문화콘텐츠 위탁운영사업자 선정 제안서 접수증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자			
제 출 자 (대 표 자)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전 화		
DDP 살림터 문화콘텐츠 위탁운영사업자 선정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정량평가자료(증빙자료 포함) 2부. 2. 사업제안서 (원본1부, 평가본 9부) 10부. 3. 사업제안서 및 발표본 수록 USB 2매 . 4. 가격제안서 1부. 끝.			
<b>(재)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귀하</b>			
제안서 접수증			
접수번호	2017 -	접수일자	2017년 월 일
회 사 명			
주 소			
대 표 자			
접 수 자	성 명	(인)	

## 일반현황 및 연혁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상 호		대 표 자	성 명	
법 인 등 록 번 호		주 민 등 록 번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본 사		
업 태		사 업 장		
종 목		설 립 일 자		
납 입 자 본 금	억원	결 산 일		
① 총 자 산	억원	② 직 영 점 / 가 맹 점	/	개 소
③ 종 업 원 수	명	④ 주 권 상 장	상장(예정) / 비상장	
⑤ 가맹본부임차인 등록번호				
입찰참가자격	기 간			
제한·정지사유	사 유			
법인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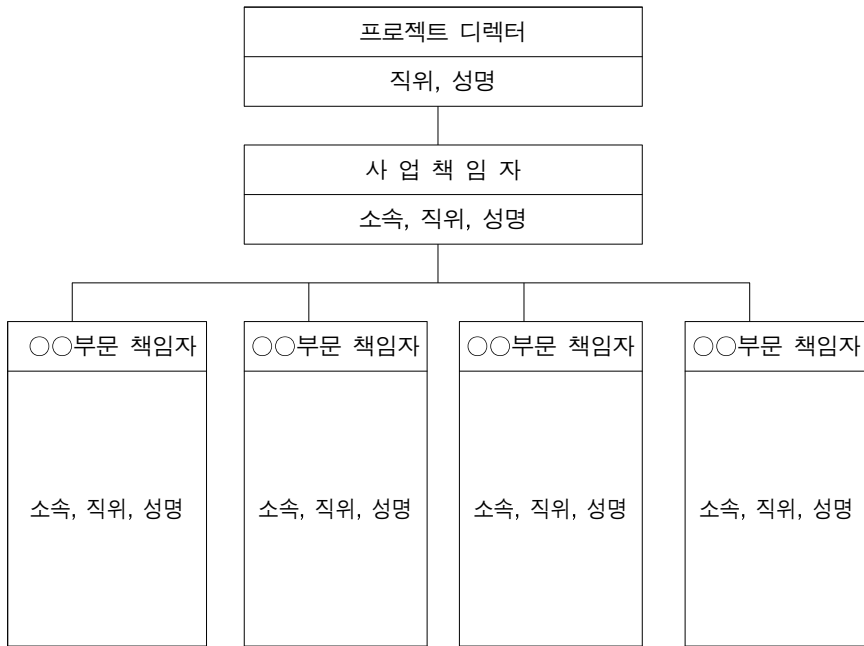
- 주) 1. 총자산 및 소득금액은 가장 최근의 회계 연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함.  
 2. 입찰참가자격 제한·정지란은 최근 3년 이내 제한·정지된 실적기간 및 사유를 기재함.  
 3. 입찰참가자 연혁은 법인설립 이후 현재까지의 영업, 재무, 관계회사 투자 등 주요 특기사항을 간략하게 기재 하되,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첨부함.



## 제안업체 참여인력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사 조직 및 인원현황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 프로젝트를 책임지는 프로젝트 디렉터와 사업 책임자는 제안사의 판단에 따라 겸임할 수 있다.(단, 프로젝트 디렉터는 정량적 평가 대상임에 유의한다.)

-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3.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 투입인력 현황 (공고일 기준)

구분	성명	소속기관	직위	최종학위	전공	경력	담당업무	사업 참여율

- ※ 유의사항
1. 사업 참여 지분율을 반드시 기재함.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에 대한 상세내역으로, 담당 부문에 대한 전문인력만 기재함.
  3. 구분 란에는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으로 구분 기재

### 투입인력 개인별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령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임무	사업 참여기간		참여율	%	
<b>경 력</b>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 월 ~년. 월)	담당업무 및 직위	발주처	비 고 (관련기술)

- 주) 1.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에 대하여 기재한다.  
 2. 연령 및 근무경력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한다.  
 3. 자격증 사본,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고용보험 가입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자사인력여부 및 경력기간, 기술자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4.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한다.

### 최근 3년간 사업수행 실적

연번	업체명	① 사업명	② 사업개요	③ 사업기간	④ 실적금액 (단위 : 천원)	발주기관	비고
계					○○ 천원		

- ① 사업명(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관련한 것만 기재) : 해당 건수별로 정확하게 기록  
 ② 사업수행 작업내용 작성  
 ③ 실적인정 시기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④ 실적인정 : 실적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매출증명서(회계법인 확인필)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첨부  
 ※ 확인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사업실적증명서(서식 제2-8호) 미 첨부 시 평가에서 '0'점 처리함

## 사업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제출처		
사업실적내용	사업명			실적구분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면적)	금액(임대료, 매출액 등)	비고
	위 사실을 증명함.					
증명서발급기관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주소			팩스번호		
	발급부서			담당자		

※ 유의사항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완료된 관련 사업을 수주한 실적만 기재
- 실적구분란에는 해당 사업 수행 업무의 분야를 기입(예: 매장운영, 임대, MD 등)
- 규모란에는 총 사업비를 기입하며, 실적란에는 공동수급으로 진행하였을 경우 실제 참여 비율과 금액을 명시
- 금액부분 기재 후 투명접착 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 1개 기관에 2건 이상의 실적 시 각각 실적증명원을 발급받아 첨부해야 함
-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한, 위 서식내용 반드시 포함

## 가산점 해당 여부

구분	항목	해당여부
약자 및 우수기업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중소기업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일자리창출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중기업	
고용안정	1. 서울소재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서울소재 중소기업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1.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1.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 이상 4점)	
	1. 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 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 임금체불, 원.하도급자의 공사대금.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2.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3. 하도급 상승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표기함

※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는 사항은 평가에서 제외함



【서식 제3호】

접수번호

## 사 업 제 안 서

「DDP 살림터 문화콘텐츠 위탁운영사업자 선정」  
-원 본 -

2017. .

대표회사명

【서식 제4호】

접수번호

## 사 업 제 안 서

「DDP 살림터 문화콘텐츠 위탁운영사업자 선정」  
-평가본-

2017. .

대표회사명